

# 2019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 내지 11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23조에 의거  
“2019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 2.



## 필수 확인 사항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신청,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 2019년 신설 시행종목에 대해서는 4월 초 시행 여부를 확정하여 재공고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www.insports.or.kr>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이 사 장

## ■ 자격종목(54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유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태권, 댄스스포츠

\* 2019년 신규 자격종목 시행(예정) : 에어로빅

##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br>과정 | · '19.4.6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 ○<br>(250)                                |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2급 경기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sup>주1)</sup>   | ○                      |                     |                          | ○<br>(25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sup>주1)</sup>   | ○                      |                     |                          | ○<br>(25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sup>주1)</sup>   | ○                      |                     |                          | ○<br>(25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19.4.6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sup>주2)</sup>        | ○                      |                     |                          | ○<br>(250)                                | 경과<br>조치 |
| 특별<br>과정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19.4.6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sup>주2)</sup> | ○                      |                     |                          | ○<br>(250)                                | 경과<br>조치 |
| 필기       | 접수 및 서류제출<br>3.4 ~ 3.12   | 응시수수료 납부<br>3.4 ~ 3.19 | 시험일<br>4.6          | 합격자 발표<br>4.26           | 필기과목(4과목)<br>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br>5.10 ~ 5.17  | 연수<br>6.1 ~ 11.17      | 현장실습<br>8.1 ~ 11.17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br>11.29 | 연수기관<br>국민체육진흥공단                          |          |

주1)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2)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br>과정 | · '19.5.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br>(90)   |    |
|          | · '19.5.11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sup>주1)</sup>                                    | ○                       | ○                    | ○                       | ○<br>(90)   |    |
|          | · '19.5.1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 ○                       | ○<br>(90)   |    |
| 특별<br>과정 | · '19.6.13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 ○                       |   |    |
|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 ○                       |   |    |
| 추가<br>취득 | · '19.6.1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                       | ○<br>(40)   |    |
| 필기       | 접수 및 서류제출<br>4.11 ~ 4.19   | 응시수수료 납부<br>4.11 ~ 4.29 | 시험일<br>5.11          | 합격자 발표<br>5.30          |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br>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
| 실기<br>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br>5.31 ~ 6.7  | 응시수수료 납부<br>5.31 ~ 6.10 | 시험일<br>6.13 ~ 7.7    | 합격자 발표<br>7.11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br>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br>7.12 ~ 7.18   | 연수<br>7.22 ~ 9.22       | 현장실습<br>7.22 ~ 10.20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br>11.8 | 연수기관<br>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충남대, 한체대   |    |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년 2월 29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 자격종목(54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낵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팅,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2019년 신규 자격종목 시행(예정) : 양궁, 펜싱, 합기도

##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br>과정 | · '19.4.6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br>(120)                               |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sup>주1)</sup>   | ○                       | ○                    | ○                       | ○<br>(12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sup>주1)</sup>  | ○                       | ○                    | ○                       | ○<br>(12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sup>주1)</sup>  | ○                       | ○                    | ○                       | ○<br>(12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sup>주1)</sup>   | ○                       | ○                    | ○                       | ○<br>(12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sup>주1)</sup>   | ○                       | ○                    | ○                       | ○<br>(120)                               | 경과<br>조치 |
| 특별<br>과정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19.4.6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sup>주2)</sup> | ○                       | ○                    | ○                       | ○<br>(120)                               | 경과<br>조치 |
|          | · '19.7.27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 ○<br>(40)                                |          |
|          | · '19.7.2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가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                         | ○<br>(40)                                |          |
|          | · '19.6.1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                       | ○<br>(40)                                |          |
|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          |
| 추가<br>취득 | · '19.4.6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 ○<br>(40)                                |          |
| 필기       | 접수 및 서류제출<br>3.4 ~ 3.12   | 응시수수료 납부<br>3.4 ~ 3.19  | 시험일<br>4.6           | 합격자 발표<br>4.26          | 필기과목(4과목)<br>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          |
| 실기<br>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br>5.31 ~ 6.7   | 응시수수료 납부<br>5.31 ~ 6.10 | 시험일<br>6.13 ~ 7.7    | 합격자 발표<br>7.11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br>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br>7.12 ~ 7.19  | 연수<br>7.27 ~ 10.13      | 현장실습<br>7.27 ~ 10.27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br>11.8 | 연수기관<br>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          |

주1)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2)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br>과정 | · '19.5.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 ○   | ○<br>(90)                              |    |
| 특별<br>과정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br>(40)                              |    |
| 추가<br>취득 | · '19.6.13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  |    |
| 필기       |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br>4.11 ~ 4.19  | 시험일<br>5.11             | 합격자 발표<br>5.30       |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br>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    |
| 실기<br>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br>5.31 ~ 6.7   | 응시수수료 납부<br>5.31 ~ 6.10 | 시험일<br>6.13 ~ 7.7    | 합격자 발표<br>7.11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br>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br>7.12 ~ 7.18  | 연수<br>7.22 ~ 9.22       | 현장실습<br>7.22 ~ 10.20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br>11.8   | 연수기관<br>강릉원주대 등 20개 기관                 |    |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자격종목(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 2019년 신규 자격종목 시행(예정) : 양궁, 펜싱, 합기도

##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과정  | · '19.5.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 (90)                     |
| 특별과정  | · '19.6.13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 ○ (40)                     |
|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40)                     |
| 추가취득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40)                     |
| 필기    |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필기과목(5과목)  |                            |
|       | 4.11 ~ 4.19   | 5.11        | 5.30         | 필수(1) : 유아체육론<br>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
| 실기·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       | 5.31 ~ 6.7  | 5.31 ~ 6.10 | 6.13 ~ 7.7   | 7.11   |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   | 연수          | 현장실습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연수기관                       |
|       | 7.12 ~ 7.18   | 7.22 ~ 9.22 | 7.22 ~ 10.20 | 11.8   |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

# 노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자격종목(55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 2019년 신규 자격종목 시행(예정) : 양궁, 펜싱, 합기도

## ■ 노인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과정  | · '19.5.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 (90)                                 |
| 특별과정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40)                                 |
|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40)                                 |
| 추가취득  | · '19.6.13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40)                                 |
| 필기    |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필기과목(5과목)  |  |
|       | 4.11 ~ 4.19   | 5.11        | 5.30         | 필수(1) : 노인체육론<br>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
| 실기·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       | 5.31 ~ 6.7  | 5.31 ~ 6.10 | 6.13 ~ 7.7   | 7.11   |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   | 연수          | 현장실습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연수기관                                   |
|       | 7.12 ~ 7.18   | 7.22 ~ 9.22 | 7.22 ~ 10.20 | 11.8   |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호남대 |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자격종목(34개 종목)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컬링

##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              |              |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과정  | · '19.4.6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br>(250) |    |
| 특별과정  | · '19.7.27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포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포럼, 국제장애인유형별 스포츠포럼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br>-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              |                 |                                |    |    | ○<br>(250) |    |
| 필기    |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필기과목(4과목)                      |    |    |            |    |
|       | 3.4 ~ 3.12   | 3.4 ~ 3.19   | 4.6          | 4.26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장애인스포츠포럼 |    |    |            |    |
| 실기·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    |            |    |
|       | 5.31 ~ 6.7   | 5.31 ~ 6.10  | 6.13 ~ 7.7   | 7.11            |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제외), 국기원(태권도)      |    |    |            |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  | 연수           | 현장실습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연수기관                           |    |    |            |    |
|       | 7.12 ~ 7.19  | 7.27 ~ 12.15 | 7.27 ~ 12.15 | 12.20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자격요건  |  |             |              |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과정  | · '19.5.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  | ○  | ○  | ○<br>(90) |    |
| 특별과정  | · '19.6.13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  | ○  | ○  | ○<br>(40) |    |
|   | · '19.6.13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포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포럼, 국제장애인유형별 스포츠포럼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                 |  |    | ○  | ○<br>(40) |    |
|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19.6.13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종목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특례 |
| 추가취득  | · '19.6.13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  | ○  | ○  |           |    |
| 필기  |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필기과목 (5과목)   |    |    |           |    |
|   | 4.11 ~ 4.19  |             | 5.11         | 5.30            | 필수(1) : 특수체육론<br>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    |           |    |
| 실기·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    |           |    |
|   | 5.31 ~ 6.7   | 5.31 ~ 6.10 | 6.13 ~ 7.7   | 7.11            |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제외), 국기원(태권도)  |    |    |           |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  | 연수          | 현장실습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연수기관   |    |    |           |    |
|   | 7.12 ~ 7.18  | 7.22 ~ 9.22 | 7.22 ~ 10.20 | 11.8            | 대구대, 백석대, 용인대, 원광대   |    |    |           |    |

# 건강운동관리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요건  |   |             |             |                 | 취득절차   |    |             |            | 비고       |
|-------|---|-------------|-------------|-----------------|--|----|-------------|------------|----------|
|       |   |             |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 일반과정  | · '19.6.22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sup>주1)</sup><br>-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  | ○  | ○           | ○<br>(200) |          |
|       | · '19.6.22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br>-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  | ○  | ○           | ○<br>(200) |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sup>주2)</sup>  |             |             |                 | ○  | ○  | ○           | ○<br>(200) | 경과<br>조치 |
|       |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br>- '15.1.1. 당시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sup>주2)</sup>                       |             |             |                 | ○  | ○  | ○           | ○<br>(200) | 경과<br>조치 |
| 필기    |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필기과목(8과목)  |    |             |            |          |
|       | 5.16 ~ 5.24   | 5.16 ~ 6.3  | 6.22        | 7.8             | 가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             |            |          |
| 실기·구술 |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검정내용   |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          |
|       | 7.8 ~ 7.12  | 7.8 ~ 7.15  | 7.20 ~ 7.22 | 7.25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연수    | 등록 및 연수비 납부   | 연수          | 현장실습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연수기관   |    |             |            |          |
|       | 7.26 ~ 8.1  | 8.3 ~ 11.17 | 8.3 ~ 11.17 | 11.29           | 계명대, 순천향대, 연세대, 조선대  |    |             |            |          |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년 2월 29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단위 : 원)

| 자격구분         |      |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      | 자격증 발급(재발급) |
|--------------|------|--------|-----------|---------|-------------|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500,000 | 1,000       |
|              | 특별과정 | -      | -         | 500,000 | 1,000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200,000 | 1,000       |
|              | 특별과정 | -      | 30,000    | 150,000 | 1,000       |
|              | 추가취득 | -      | 30,000    | -       | 1,000       |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250,000 | 1,000       |
|              | 특별과정 | 18,000 | 30,000    | 150,000 | 1,000       |
|              | 추가취득 | -      | 30,000    | -       | 1,000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200,000 | 1,000       |
|              | 특별과정 | -      | 30,000    | 150,000 | 1,000       |
|              | 추가취득 | -      | 30,000    | -       | 1,000       |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200,000 | 1,000       |
|              | 특별과정 | -      | 30,000    | 150,000 | 1,000       |
|              | 추가취득 | -      | 30,000    | -       | 1,000       |
| 노인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200,000 | 1,000       |
|              | 특별과정 | -      | 30,000    | 150,000 | 1,000       |
|              | 추가취득 | -      | 30,000    | -       | 1,000       |
| 건강운동관리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400,000 | 1,000       |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500,000 | 1,000       |
|              | 특별과정 | -      | -         | 500,000 | 1,000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일반과정 | 18,000 | 30,000    | 250,000 | 1,000       |
|              | 특별과정 | -      | 30,000    | 150,000 | 1,000       |
|              | 추가취득 | -      | 30,000    | -       | 1,000       |

※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따른 택배비는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시험일 기준
- **※ 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18세)을 충족해야 함.**

###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 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 **※ 2019년 신설 시행종목에 대해서는 4월 초 시행 여부를 확정하여 재공고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구술기관 연락처

| 자격구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
| 전문스포츠지도사<br>생활스포츠지도사<br>유소년스포츠지도사<br>노인스포츠지도사 | 대한체육회 (태권도 제외)    | 02)2144-8171      |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br>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
|   | 국기원 (태권도)         | 063)320-0210~0212 |   |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 제외) | 031)526-9447~9448 |   |
|   | 국기원 (태권도)         | 063)320-0210~0212 |   |
| 건강운동관리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177       |   |

## 연수기관 연락처

| 자격구분                | 기관명 및 전화번호              |                          |                      |                      |                      |                       |                          |  |
|---------------------|-------------------------|--------------------------|----------------------|----------------------|----------------------|-----------------------|--------------------------|--|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br>(1)  | 국민체육진흥공단<br>02)410-1177 |                          |                      |                      |                      |                       |                          |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br>(5)  | 국기원<br>063)320-0210~2   | 동아대<br>051)200-6350      | 조선대<br>062)230-7404  | 충남대<br>042)821-6441  | 한체대<br>02)410-6662~4 |                       |                          |  |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br>(2)  | 국민체육진흥공단<br>02)410-1177 | 원광대<br>063)850-6381      |                      |                      |                      |                       |                          |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br>(20) | 강릉원주대<br>033)640-2647   | 건국대<br>043)840-3900      | 경기대<br>031)249-9082  | 경남대<br>055)249-6380  | 경상대<br>055)772-2290  | 경희대<br>02)961-9650    | 계명대<br>053)580-5513      |  |
|                     | 군산대<br>063)469-4641     | 부경대<br>051)629-5633      | 안동대<br>054)820-7380  | 용인대<br>031)8020-3166 | 인천대<br>032)835-8570  | 전남대<br>062)530-0550   | 전북대<br>063)270-3590      |  |
|                     | 제주대<br>064)754-8318     | 중앙대<br>02)820-6478       | 충남대<br>042)821-6403  | 충북대<br>043)249-1805  | 한양대<br>031)400-5727  | 호서대<br>041)540-5860   |                          |  |
| 유소년스포츠지도사<br>(5)    | 가톨릭관동대<br>033)649-7778  | 경남대<br>055)249-6380      | 광주대<br>062)670-2209  | 중앙대<br>02)820-6478   | 호서대<br>041)540-5869  |                       |                          |  |
| 노인스포츠지도사<br>(7)     | 가톨릭관동대<br>033)649-7959  | 대전대<br>042)280-2910/2924 | 목포대<br>061)450-6095  | 신라대<br>051)999-5574  | 연세대<br>02)2123-6582  | 이화여자대<br>02)3277-2556 | 호남대<br>062)940-3706/3617 |  |
| 건강운동관리사<br>(4)      | 계명대<br>053)580-5513     | 순천향대<br>041)530-1544     | 연세대<br>02)2123-8139  | 조선대<br>062)230-7404  |                      |                       |                          |  |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br>(1) | 국민체육진흥공단<br>02)410-1177 |                          |                      |                      |                      |                       |                          |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br>(4) | 대구대<br>053)850-6080     | 백석대<br>041)550-2989      | 용인대<br>031)8020-3160 | 원광대<br>063)850-6617  |                      |                       |                          |  |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 원서접수, 연수등록, 결과발표 등

■ 대표 안내전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콜센터 02)410-1177

본 시행 계획은 2019년도 연간 추진일정 안내를 위한 공고이며, 응시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험  
1개월 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의 스포츠 그 모든 순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생활 스포츠에서 국가적 스포츠 사업까지  
스포츠 전 분야에 걸친 든든한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건강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국민체력100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국민체육센터



내일의 스포츠 영웅을 키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대한민국 스포츠를 진단하는  
스포츠과학 연구



차별 없는 스포츠복지 실현하는  
엘리트·장애인·생활 체육 육성